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경실련,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재정넷]
참여연대 최재혁 간사(02-723-5302, tsc@pspd.org)
경실련 서희원 팀장(02-3673-2141, hwseo@ccej.or.kr)
제 목 [논평] 국회의원 배우자·가족 소유 가상자산은 방치하나
날 짜 2023.06.16. (총 6 쪽)

논 평

국회의원 배우자·가족 소유 가상자산은 방치하나

국회사무처, 법 취지 왜곡해 의원 소유 가상자산만 등록 진행
배우자·직계존비속 가상자산 등록 명시한 법개정 취지 훼손해

1.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국회법」(참고: 붙임자료2)은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만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회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명백하게 반하는 꼼수 결정에 불과하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국회법」 등이 개정된 경과에 대해 엄중하게 되짚어보고 국회의원의 청렴과 이해충돌 방지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가상자산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회법」 개정의 원래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반드시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2. 지난 5월 22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되었고 부칙에 관련한 특례를 마련하여 제21대국회의 현직“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이번 가상자산의 등록이 “개정 「국회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제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중략) 본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참고: 붙임자료1). 제도의 사각지대에 숨어, 국회의원도 상당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해충돌의 위험 또한 방치되었다. 그로 인해 가상자산의 보유 등과 관련하여 「국회법」 등이 개정되었다. 사회적인 요구가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관련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그 목표는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하고 이들의 이해충돌 등을 확인하는데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의 목적, 이와 관련한 사회적인 요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3. 국회사무처는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 개정 「국회법」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고 그 내용을 축소했다. 본칙조항에서 국회의원도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무엇을 근거로 국회의원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만 등록하도록 판단했는지 에 대한 근거와 그 결정과정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넷은 「국회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되어 이해충돌 여부 등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공직윤리제도의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는다. 법률의 실제 집행과 시행령의 개정 등에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재정넷은 개정 「국회법」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등록과 그 이후 이해충돌 등에 대한 판단, 등록된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공개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끝.

▣ 붙임1: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안내> 중 관련 내용

▣ 붙임2: 개정 「국회법」의 관련 내용

PART

I 가상자산 등록 개요

① 『국회법』 개정 경과

개정 배경

-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이 개정되었음.
(23. 5. 25. 본회의 의결, 6. 7. 공포 · 시행)

주요 내용

- 의원 당선인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가상자산 및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 (제32의2제1항제6호의2)
- 제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개시일부터 23. 5. 31.까지 본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3. 6. 30.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 (부칙 제2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해충돌 여부 검토 후 23. 7. 31.까지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의견 제출

● 이하, 개정 『국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3. 6. 30.까지 제출해야 하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등록 방법에 대한 안내 사항입니다.

② 등록 주요 사항

📁 등록 의무자

- 제21대 국회의원

📁 등록 사항

- 대상 기간 :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 제21대 국회 임기개시일 : 20. 5. 30. (재·보궐 선거 : 당선 결정일)
- 등록 대상자 : 의원 본인
- 등록 내용 :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 등록 기한

- 2023년 6월 30일 (금)
* 등록 기간 : 23. 6. 15.(목) ~ 6. 30.(금)

📁 등록 신청서 작성

-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등록 신청서》 작성
- [별지 1] 가상자산 소유 현황, [별지 2] 가상자산 변동내역 작성
* 대상 기간 내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서》만 제출

📁 제출 방법

-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등록 신청서》 및 [별지 1], [별지 2]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
* [별지 1], [별지 2]는 서면과 함께 엑셀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제출 장소

-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 (소통관-425호)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신설 2021. 5. 18.>

-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1.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3.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4.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5.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민간 부문에서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7.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나.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8.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
-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사적 이해관계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제32조의3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에 관한 검토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9429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등록에 관한 특례 등) ①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2023년 7월 31일까지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